

한화솔루션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(2020.05.12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내부거래를 심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는 위원총수 2/3이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4조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. 단,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모사전송기(FAX), 유선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의안제출)

-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1주일전 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0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1)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,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, 유가증권, 자산 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 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30억원 이상인 거래
 - (2)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(또는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그 출자회사의 자회사, 이하 같음)를 상대방으로 하거나, 동 계열회사를 위한 상품용역거래 중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
 - (3) 회사에 설치된 내부거래심의위원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거래
 - (4)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제1항, 제2항의 거래에 거래 목적, 거래 상대방, 거래 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또는 거래금액·거래단가·약정이자율 등이 위원회 의결 당시 대비 20%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(위원회의 재승인), 다만 위 제2호의 거래 및 제3호의 거래 중 상품 또는 용역거래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심의된 금액보다 20%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 (보 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간 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9년 7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다만 3.5.1에 정한 개정 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8년 1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